

감사위원회 규정

HD건설기계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고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

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이사회 소집청구 및 직접 소집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
-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해당 위반사실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9)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 10)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1)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2)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
- 13)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4)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5) 위원회 지원조직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제11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감사인의 선정 등

제13조 (선정)

- ① 위원회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미리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4항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1>,<별표2>에 의한다.
- ⑤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외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제13조의 2 (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6. 외감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감사인이 동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6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 (이하 “전기감사인” 이라고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위원 전원의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제17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1조 (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위원회 지원조직을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지원조직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지원조직은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지원조직은 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4월	03일	제정
2019년	3월	26일	1차 개정
2021년	4월	26일	2차 개정